

하 동 군 공 보

(2) 제 390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12월 13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28호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을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 제4항”으로 한다.

제2조 제3호 중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를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대표 및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

협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간”으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장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을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특정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를 “대형유통기업의 대표”로 하며, 2호 중 “전통시장, 슈퍼마켓”을 “군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으로 하고, 5호 중 “경제업무 담당과장”을 “유통업무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6호 중 “그 밖의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6항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390 호

⑦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8항 중 “시장업무”를 “유통산업업무”로 한다.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중 “중소유통기업”을 “지역중소유통기업”으로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4호까지에서 규정 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 이라

하 동 군 공 보

(5) 제 390 호

한다)를” 를 “대규모점포 등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영업을 시작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13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것과”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로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로,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 일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의2에 제2항에서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동 군 공 보

(6) 제 390 호

-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등과 주변 중소기업 그리고 주변상인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합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 제2호의 “이해당사자의 합의”란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회에서 의결된 경우 이를 합의로 본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그 운영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군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공포한다.

2013년 12월 13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29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이하 “에코하우스”라 한다)는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21-2에 둔다.

제3조(기능) 에코하우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육 및 생태체험장
2. 각종 워크숍 등 회의 장소
3. 방문객의 숙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에코하우스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②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재위탁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제6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7조(사용료)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 가.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하는 자체행사
 -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 동 군 공 보

(10) 제 390 호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제1호,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
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
4.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시설물을 훼손·망실하는 행위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3.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2) 제 390 호

【별표 1】

삼화 에코하우스 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숙박	본관동 (단체 숙박)	30명이하/1일	주중 90,000	주말 100,000	※ 기타사항 ◦ 주중 : 일요일 ~ 목요일, 주말 : 금·토·공휴일 ◦ 1일(박) : 당일 14:00~익일12:00까지 ◦ 기준 초과시 : 추가 5,000원/1명
	숙박동 (방 2, 거실 등)	10명이하/1일	70,000	80,000	
	숙박동 (방 1, 주방)	4명이하/1일	30,000	40,000	
다목적실		-	4시간미만 80,000	1일 100,000	※ 숙박시설 사용시 : 사용료의 50%감면
운동장		-	50,000		※ 숙박시설 사용시 : 사용료 면제

【별표 2】

삼화 에코하우스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반환기준	비고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 납부한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납부한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하 동 군 공 보

(14) 제 390 호

【별지 제1호 서식】

일련번호 :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div>			
신 청 인	성명(단체)		전화번호
	주 소		
사용목적 및 행사내용	목 적		
	행사내용 (참여인원 등)		
사용 기간	20 ~ 20 (박 일)		
사용 시설			
사 용 료 (감면금액)	원		
기타사항			
하동군 삼화에코하우스 시설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하 동 군 수 귀하			
일련번호: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시설 사용(변경) 허가 통지서 </div>			
사 용 자	성 명(단체)		전 화 번 호
	주 소		
사 용 기 간	20 ~ 20 (박 일)		
사 용 료 (감면금액)	원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고시 제2013 - 7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54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12. 12.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1길 113 외 3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34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16) 제 390 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67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54-20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597-2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상고개로 253-24	20070618	양보면 박달리에서 진교면 월원리 경계에 있는 재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221-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86-4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88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256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신대리 253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삼신대길 109	20070618	신대리 뒤희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유계리 198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신촌길 6-28	20070618	근세에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262-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669-22	2007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4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길 64	20070618	동매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문암리 66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덕천로 298-21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북계리 148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대밭땀길 30-35	20070618	대밭이질어 대밭땀이라고 불리워져 대밭땀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552-3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계산길 42-1	20070618	뒷산의 계명산아래 자리잡고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북1길 123-9		20070618	산북도로의 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들내리 789-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북1길 113	20070618	산북도로의 지명을 사용하여 일련번호 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14-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405-16	2007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두암리 680-2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단로 1675-53	20070702	하동군 옥중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양구리 445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단로 769-70	20070702	하동군 옥중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철수리 456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옥단로 662-11	20070702	하동군 옥중면과 산청군 단성면의 첫글자를 사용하여 도로명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222-10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나팔목길 17-15	20080402	모섬과 마을 사이를 흐르는 강을 소리가 나팔부는 소리처럼 들려 붙여진 마을이름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나팔목길로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833-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추평길 63	20080402	홍지의 홍자와 해평의 평자를 따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공황리 148-3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길목길 73	20080402	길목이라는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회신리 830-3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내회신길 113-73	20080402	양지마을 옆 회신교에서 계곡을 따라 깊숙히 들어간 곳에 위치한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308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가락길 58	20080402	가락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565-19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669-2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상이리 255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1605-22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대곡리 426-2	경상남도 하동군 옥중면 한계길 9	20090302	옥산에서 흐르는 차고 맑은 물이 마을 앞을 흘러가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450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평들담길 3	20090302	성평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에 돌담이라는 마을지역특성을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흥리 83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직골길 27	20090302	고직골 골짜기의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략리 59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랑해안길 117	20090302	해안을따라 지나는길이라 명명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3길 11-2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3길 19	20090302	광평리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의 지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세번째 도로명 반영	